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9. 16.목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8. 25. 안향자 의원 외 19명 발의 (의안번호 377호)
- 나. 회부일자: 2021. 8. 26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1. 9. 8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향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.(안 제1조~제2조)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
-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동성)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권의 보장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또는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¹⁾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러한 법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,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〈성북구 장애 유형별〉

(단위: 명)

계	발달장애		지체장애	뇌병변	시각장애	청각장애	신장장애	정신장애	언어	기타
	지적장애	자폐성장애								
17,463	1,366		7,723	1,783	1,924	2,593	805	651	169	459
	1,126	230								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(과태료)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3.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,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
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49조(차별행위)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
-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한 안내견 출입 확대 홍보, 픽토그램 보급²⁾, 교육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,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, 같은 법 제40조제1항³⁾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·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.

2) 픽토그램(pictogram): 사물이나 시설, 사회적인 행위나 개념 따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단순화하여 나타낸 그림문자. 또는 그런 그림문자를 사용한 안내판이나 표지판. 주로 공공시설이나 교통안내판 따위에 사용(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언어체계)

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(장애인 보조견의 훈련·보급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(補助犬)의 훈련·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